====== 【 기술보호와 법 】 =======

I. 법, 어떻게 이해할까

1. 법의 필요성 - 만약 법이 없다면?

- (1) 사람들 사이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할 수 없을 것
- 분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충돌 이 발생한다.
- 충돌은 반드시 고의적인 것만은 아니고, 많은 경우 서로 다른 관행이나 계약에 대한 해석이나 관점의 차이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계약의 문구가 확실하지 않아서 생기기도 한다.
- (2)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때 이를 규율할 수 없을 것

2. 법률

- (1) 법과 법률
- ① 법률은 법규범의 하나이다.
- 법에는 법률 외에도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있고, 불문법인 관습법, 판례법 등도 법을 구성 한다. 따라서 법은 법률 이상의 규범이다.
- ② 법률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이다.
- 명령이 대통령이나 행정각부 즉 정부가 제정한 것인 반면, 법률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이다.
- 의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국민의 자유, 재산, 생명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공권력의 행사요건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 (2) 성문법과 불문법
- 1) 성문법
-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권한 있는 기관이 제정·공포한 법을 말한다.
- 법규범의 성문화 → 고정성 → 사회 사정의 신속 적응 어려움(단점)
- 참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서 관련 법률의 시행령이 있고, 하위에 구체적

2) 불문법

- 문장으로 표현된 제정법이 아니고 실제 관행으로 존재하는 법원을 의미한다.

① 관습법

- 사회생활 속에서 관습이 반복하여 행하여져서 일반인이 법적 확신 내지 인식을 가짐으로 써 법적 가치를 얻는 불문형식의 법이다.

② 판례법

-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형성된 불문의 규범을 의미한다.
- 법원의 판결 자체가 판례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반복됨으로 보서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불문법이다.

(3) 일반법과 특별법

- 법의 효력범위가 일반적·보편적 사항에 대한 것인가, 특수한 부분인가를 기준으로 법을 분류하는 것이다.

① 일반법

- 사람, 사항, 장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넓은 효력범위를 갖고 적용되는 법

② 특별법

- 특수적인 좁은 사항에 국한된 효력범위를 갖는 법
- ※ 법을 적용하는 순위에서 특별법이 일반법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
- →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 → 민법은 민사에 관한 일반법이고, 상법은 민사 중 특히 상사에 한하여 효력을 미치는 민 사에 관한 특별법이 되는 것이다.

(참고)

- * 원고 v. 피고
- * 고소 v. 고발
- * 배상 v. 보상

======= 【 기술보호와 법 】 ========

3. 법의 효력

(1) 법의 시간적 효력

1) 법의 시행

- 법은 시행에 앞서 '공포'를 한다. 공포는 법의 성립과 그 내용을 국민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기간은 '법의 주지기간'으로, 법에 따라서는 따로 시행일을 정하기 도 한다.

2) 법률불소급의 원칙

- 법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적용하지 않고,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 예.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2) 법의 장소적 효력

1) 속지주의

-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영토 안에서 발생한 일체의 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

2) 속인주의

- 범죄지가 어디인지 여부를 불구하고(외국에서의 행위라도)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 우리나 라의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3) 보호주의

- 범죄지와 범죄인의 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
- ** 우리나라 현행법은 속지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속인주의 및 보호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속지주의만을 고집하면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속지주의 원칙을 보충하기 위해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가미한다.

====== 【 기술보호와 법 】 =======

Ⅱ. 우리나라의 법제도

1. 우리 법의 계통

(1) 대륙법계

-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대륙에서 생성, 발달한 법계통
- 성문법주의
- (장점) 조직적, 논리적 (단점) 사회변화에 신속 대응 못함

(2) 영미법계

-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법계통
- 판례법주의
- 배심재판제도

<< 국민참여재판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
-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 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
- 1심 형사재판 중 일부 법정 요건 충족의 경우
- 특징은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
- 배심원의 자격 -->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음.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음.
- 배심원선정 : 법원은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 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후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 일을 통지

====== 【 기술보호와 법 】 =======

2. 법조문 읽기

- 법조문의 체계 : 조, 항, 호
- ① 조, 항 : 제1조 제1항 / §1① 예) 제2조[신의성실]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② 호 : 제1조 제3호 / 제1조 제1항 제3호
- 예)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수 있다.
- 1. 보존행위
-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③ 제0조의2
 - 예) 제826조의2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④ 본문 / 단서
- 예)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문 / 제2문
- 예)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판결번호 이해하기]

- 판결내린 곳의 이름 / 판결일 / 사건번호 예) 대법원 2020. 2. 1. 선고 2019다2797 판결
- 사건번호 : 연도, 사건종류, 접수번호 위 예는 2019년 접수된 / 민사사건 / 2797번째 접수 사건

======= 【 기술보호와 법 】 ========

I. 지식재산은 무엇인가?

I. 지식재산은 무엇이고 왜 보호하는가

- O. 지식재산이란 무엇이고 왜 권리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가?
- 유형의 재산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재산제도를 통해 보호
- 무형의 재산에 대해서는 훔치기도 쉽고 침해를 주장하고 보호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제도를 통해 보호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1. 지식재산의 의의 및 특징

- 1. 지식재산의 의의
- 인간의 지식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창작물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
-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
- 독점배타적 권리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과학기술과 문화발 전의 토대가 되기 위함
- 2. 지식재산의 특징
- 지식재산은 무형의 재화
-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이 없듯이 대부분 지식재산은 앞서 만들어 놓은 지식과 문화 유산에 대한 학습과 경험에 의해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공익성을 지닌 제한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식재산권은 보호기간에 제한이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만인의 공유(Public Domain)가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 지식재산권의 종류

Ⅱ. 지식재산제도의 체계 이해

1. 산업재산권

1. 특허권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에 주어지는 독점배타적 권리
- 기술적 창작 중 산업상 이용가능하고 새롭고 진보한 것을 보호한다. (신규성 + 진보성)
- 자신이 발명한 물건에 대해서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출원이라는 엄격한 형식적 절차 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1) 창작

- 창작적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발견'은 발명과 구분되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

2) 신규성

- 출원발명이 기존에 공지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3) 진보성

- 해당 발명과 선행 기술과 비교해서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는지 판단한다.

(3) 효과

- 특허등록을 하게 되면 출원 후 20년 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 기술보호와 법 】 ========

2. 실용신안권

- '소발명'이나 '계량발명'을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 이미 발명된 물품 등의 형상이나 구조를 개량한 것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단, 특허보다 진보성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다.)
- 특허에 비해 일반인이 용이하게 권리자가 될 수 있다.
- 출원 후 10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디자인권

(1) 의의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에 대해 주어지는 독점배 타적 권리이다.

(2) 요건

- 디자인이 물품에 구현되어야 한다.
-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을 충족해야 한다.

(3) 효과

- 디자인등록을 하면 출원 후 20년간 권리 보호를 받는다.

4. 영업비밀

(1) 의의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효과

- 영업비밀을 보호받고자 하는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국가는 부정한 수단(절취, 기망, 협박, 산업스파이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하는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하게 된다.

======= 【 기술보호와 법 】 ========

- 5. 상표권
- (1) 의의
- 타인의 상품과 내가 생산한 제품을 구별하고 식별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 구성된 표시를 말한다.
- (2) 요건
- 식별력 : 자타상품식별
- (3) 효과
- 등록을 통해 상표권으로 보호받는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되면 보호기간 10년으로 보호를 받는다.

2. 저작권

- (1) 의의
- 인간의 지적능력을 발휘하여 달성한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으로 인정되는 권리
- (2) 저작물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을 저작물이라고 하며,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한다.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저작권이라 하고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 (3)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라고 한다.
- (4) 효과
- 별도의 출원 및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등록과 무관하게 저 작물을 창작한 시점에 발생한다.
- 보호기간 : 저작자가 생존하는 기간동안 보호.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 보호기간이 만료 하면 권리 소멸되어 자유롭게 이용가능

======= 【 기술보호와 법 】 ======== << 발명과 특허란 무엇인가?? >>

I. 발명과 특허란 무엇인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1. 발명이란?

(1) 발명의 의의

- 발명이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창출해내는 것이다. 새로운 기능을 부가 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의 제거, 용도의 변경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존의 요소들을 변화 시켜 유용한 효과를 갖는 새로운 것이면 모두 발명이다.
-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보는 것처럼 '자연법칙의 이용성', '창작성', '창작의 고도성' 등을 가진 기술적 사상을 말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것 중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2) 발견과 비교

- 발견의 사전적 의미 : 미처 찾아내지 못하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는 것
- 발견이 모두 발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발명의 선행단계인 발견을 거쳐 발명으로 완성된다.
- 발견은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발명과는 구분되기 때문에 특허법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예 외적으로 용도를 발견하는 발명은 용도발명으로 인정하여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 재미있는 발명 이야기 >

평범한 세일즈맨이었던 '킹 질레트'는 면도를 하다 면도칼에 얼굴을 베인 후 얼굴이 베이지 않는 안전면도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안전면도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실의에 빠져 있던 중 자신의 머리를 다듬던 이발사가 빗을 이용해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즉, 빗을 사용하지 않고 가위를 머리카락에 직접 대고 자르면 다칠 염려가 있으나, 빗을 사용하면 빗이 막아주어 다칠 염려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칼날 옆에 안전대를 붙이고 쓰다가 칼날이 무디어지면 버리고 새것으로 갈아 끼우는 모양의 질레트 안전면도기는 이렇게 이발관의 아이디어로 태어났다.

======= 【 기술보호와 법 】 ========

(3) 일반적 발명 기법

- 발명이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창출해내는 것이지만, 대부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제품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더하기 기법

- 기존의 물건에 물건을 더하거나 방법을 더하여, 발명품을 만들어 내는 것
- 예. 양날면도기처럼 똑같은 물건을 더하는 A+A 방법과 지우개 달린 연필처럼 서로 다른 물건끼리 결합시키는 A+B의 방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

2) 용도 바꾸기 기법

- 어떤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기법
- 전등을 살균 램프로 활용하는 방법, 천막천으로 만든 청바지 등이 용도바꾸기 기법으로 만든 발명품

3) 모방하기 기법

- 타인의 아이디어를 다른 곳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발명기법으로 최근 많이 이용되는 기 법 중 하나
- 남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기법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새로운 것을 더한다는 점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타인의 아이디어가 특허등록된 경우에는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특허권의 존재여부 및 권리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인라인스케이트)

4) 그 외

- 반대로하기(발가락양말), 크기바꾸기(3단접이양산), 편리하게하기(리모컨)

(4) 발명과 기술의 비교

- 발명은 기술적 사상이므로 구체화의 정도에서 기술에 못 미친다.
- 발명과 기술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인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기술은 산업상 실제로 그대로 이용가능한 구체적인 수단이고, 발명은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고 추상적 이고 개념적인 수단인 점에서 구별된다.

(5) 발명과 발견 비교

- '만유인력의 법칙 발견' 등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발명과 다르다.
- 자유낙하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등의 자연법칙 자체의 발견에는 자연법칙의 이용성이 결여되어 있다.

====== 【 기술보호와 법 】 =======

2. 특허창출을 위한 발명기법

(1) 선행기술조사의 필요성

- 발명기법에 의해 유용한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성된 모든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 1)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와 관련된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바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아이디어와 관련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2)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에 관한 발명이 이미 특허출원되었다고 하여 포기할 필요는 없다. 선행기술과 차별화될만한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발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2) 구성요소 재결합에 의한 발명기법

- 1) 구성요소의 부가 : A+B+C → A+B+C+D
- 기존 제품에 한가지 이상의 기능요소를 더하여 새로운 유익한 물건을 만드는 것이다. (예. 지우개 달린 연필, 라디오 겸용 녹음기)
- 구성요소의 부가에 의한 발명은 만약 부가된 구조가 이미 이전부터 있는 기술이고 기능적 부가에 의한 특별한 효과 및 새로운 기능 추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종래기술의 단순 결합이라 하여 특허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2) 구성요소의 삭제 : A+B+C+D → A+B+C
- 구성요소의 구조적 제거를 하는 발명이다.
- 기능은 유지하면서 구성요소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다.
- 구성요소의 기능석 삭제에 의한 발명품의 경우에는 필수기능만 유지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없앰으로써 제품원가를 낮추는 장점이 있다. 이때 구성요소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특정 구조를 제거함에 따라 제품의 성능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구성요소의 삭제에 의한 발명 창출은 단지 구조를 삭제하여 비용절감 및 소형화 등과 같이 충분히 에측가능한 효과만 있어 특허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3) 구성요소의 치환 : A+B+C+D → A+B+C+D
- 구성요소의 부가나 삭제 외에, 발명을 이루는 단위요소들 중 일부를 다른 제품 또는 기술분양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요소로 대체 또는 치환하는 방법이다.
- 예. LCD TV는 자체 발광원이 없어서 다른 백라이트를 발광원으로 사용하는데 이를 LED로 바꿔서 더 밝게 만든 경우이다.

====== 【 기술보호와 법 】 =======

< 발명 사례 >

길라 C&I의 김동환 사장은 교통경찰관이 야간에 목과 어깨 사이에 전등을 끼워 어렵게 필기하는 것을 본 후, 불빛이 없는 곳에서도 글씨를 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볼펜 끝 부분에 형광물질을 이용하여 밤에도 불을 밝혀 쓸 수 있는 반디라이트 펜을 개발하였다.

3. 발명이 모두 특허가 될까?

Q.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특허의 대상"이라고 한다. 우리 민족 최대의 발명 '한 글'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특허제도가 있었다면, '훈민정음'을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 었을까?

- (1) 특허로 될 수 있는 발명
- 특허로 될 수 있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의미한다.
 - 1) 발명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
 - 자연법칙 자체나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발명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2) 기술적 사상
 - 마르크스의 유물론, 아담스미스의 경제이론 등은 인문학적 사상이며, 기술적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이 될 수 없다.
 - 3) 창작
 - 창작적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발견'은 발명과 구분되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
- (2) 발명으로 인정되는 것들
 - 1) 영업발명

====== 【 기술보호와 법 】 =======

- 영업방법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발명'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업 방법이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방법에 해당하고, 소프트웨 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줄 경우 '발명'에 해당할 수 있다.

2) 음식

- 먹는 음식이 발명이 될 수도 있다. 짜장소스의 제조방법, 다금바리 회 조성물 및 그 제 조방법 등 많은 음식특허가 있다.

3) 박테리아 유전자

- 특허가 될 수 있다. 자연자체의 미생물은 불가능하지만, 비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합성물로 인간의 창작적 활동의 결과물로서 자연적 박테리아와 현저히 다른 특 성을 갖고 있다면 발명이 될 수 있다.

====== 【 기술보호와 법 】 =======

<< 내가 만든 기술,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

- 특허의 요건 -

I. 특허의 요건

-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발명이 과학기술과 산 업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 특허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종래 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종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한다.

1. 산업상 이용가능성

(1) 의의

-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학술적·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발명에 해당될 수 없다.
- 산업상 이용가능하다는 것은 생산 등 산업 활동을 위하여 동일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실시 할 수 있을 것을 의미한다.
- 인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발명은 기술적 사상이므로 추상적이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구체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기대하는 기술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이어야 한다.

Q. 설거지를 하다가 세제가 묻은 손으로 싱크대 손잡이를 잡는 것이 불편하여 발로 수 도꼭지를 잠그고 틀 수 있는 발명을 생각하여 보았다. 제품이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Α

- 발명은 '기술적 사상'이지, '기술적 제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제품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 기술적사상: 사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성은 있지만 동시에 구체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는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완벽한 제품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음이 심사관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 기술보호와 법 】 =======

2. 신규성

- (1) 의의
- 출원된 발명이 과거 공개된 발명(선행기술)과 동일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 (2) 신규성 부정
- 신규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
 - ①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 ②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된 발명
- 공지 :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
 - Q. 나발명은 미국여행 중 '충전기내장형 스마트폰 케이스'를 보았다. 별도 충전기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에 편리할 것이라 보였고, 우리나라에는 특허로 출원된 기술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기술을 나발명이 국내 특허로 출원할 수 있을까?
- A.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비공지성' 즉, 알려지지 않았을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특허를 받기 위해 전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발명이어야 하고, 발명이 특허로 권리를 받게되면 해당 국가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 --> 나발명은 국내에는 없지만 해외에서 알려진 기술을 국내에서 특허로 출원할 수 없다.
 - Q. 나발명은 1년동안 고민하여 완성한 발명을 세상에 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서 알렸다. 특허를 출원하려고 하니, 이미 알려진 발명이라 신규성이 없다고 한다. 나발명은 특허출원을 할 수 없는 것인가?
- (3)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규성을 상실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에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 【 기술보호와 법 】 =======

- 출원 전에 스스로 또는 타인에 의해 해당 발명이 대중에게 공지된 경우라도 그 공지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특허 출원서에 그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출원을 하면 예외적으로 공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고, 이미 공지된 것 때문에 특허출원을 못하게 되지 않는다.

A. 다른 사람이 아닌 발명자 스스로 알린 것이라 하여도 신규성을 잃어버린 것이 된다. 기업들이 홈페이지, 블로그와 함께 기술설명회, 논문발표 등으로 알리는 경우가 있다. 이 러한 방법으로 세상에 알려진 후에 나중에 특허로 출원하려고 하면 신규성이 문제가 되 어 권리화할 수 없게 된다.

실수로 홈페이지, 박람회, 논문발표 등으로 공지되어 알려지게 된 경우 출원 후 1년 이내에 먼저 공지된 사항을 신고하면, 신규성이 없더라도 신규성을 인정해주는 제도(신규성의제)가 있다.

3. 진보성

(1) 의의

- 진보성이란 발명의 창작수준의 난이도를 말한다.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판단할 때 출원이 단순한 집합·치환 등이 아닌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2) 판단요건

- 진보성은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 3요소에 의하여 판단한다.

1) 목적의 특이성

- 해당 발명의 목적을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용이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말한 다.

2) 구성의 곤란성

- 해당 발명의 구성요소의 선택 및 구성이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 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3) 효과의 현저성

- 해당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도출되는 특유의 효과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

====== 【 기술보호와 법 】 =======

- Q. 특허 출원시 심사과정에서 해당 기술분야에 정통한 심사관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
- A. 진보성은 해당 발명과 선행 기술과 비교해서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발명의 목적이 특이한지, 발명으로 인한 효과가 현저한지를 종합적으로 보게되는 것이다. 그 진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보통사람의 통상적인 시각에서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진보성 판단은 해당 분야에서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아닌,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너무 높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 (3) 사후 판단 금지의 원칙
- 알고 보면 쉽지만 알기까지가 어려운 것인데, 인간의 심리상 '인지적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 진보성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출원하는 시점으로 보도록 한다. 심사하는 시점 이 아닌 출원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선원주의(선출원주의)

- Q. 나발명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기구를 발명하여 특허출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 김깜 빡이 발명을 먼저 하였는데 깜빡하고 특허출원은 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발명과정에서 연구노트 자료도 있어서 먼저 발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특허는 먼저 발명한 김깜빡이 받게 되는 것일까?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인정하여주는데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한다.
-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에 한 개의 특허출원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발명의 단일성'이라고 한다.
- A. 특허는 같은 발명인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선원주의)

====== 【 기술보호와 법 】 =======

<< 나의 권리는 어떻게 특허권 보호가 되는가? >>

- 특허권자의 권리 -

I. 권리와 의무

1. 권리란??

- (1) 권리의 의의
- 법에 의해 주어지는 힘
- 권익을 향유하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으로 법과 권리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수단이다.
- (2) 권리의 종류
- 1)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① 지배권

- 권리의 대상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 권리의 실현을 위해 타인의 협력이 불필요하고, 직접 자기의 의사로 실현할 수 있는 권리 이다. (예. 재산권)
- 권리의 대상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행위로 권리를 행사한다.

② 청구권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적인 작용을 하는 권리 (예. 채권)
-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으로 청구하고, 그 결과를 수령하는 형식으로 권리를 행사한다.

③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형성(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권리 (예. 취소권)
- 타인의 행위에 동의를 한다든지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든지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 일방 적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한다.

④ 항변권

- 타인의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권리이다. (예. 동시이행의 항변권)

======= 【 기술보호와 법 】 =======

- 2) 권리의 이전성에 따른 분류
- ① 일신전속권
- 권리자에게만 전속되어 권리자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권리의 행사가 그 권리를 가지는 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다. (예. 인격권, 신분권)
- ② 비전속권
- 권리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의 권리이다. 타인에게 상속, 양도 가능하다. (예. 재산권)

2. 의무란??

- (1) 의무의 의의
-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제당하는 법률상 구속을 말한다.
- (2) 권리와 의무 비교
- 권리 : 법률상 힘이고, 내용이 특정한 권익
- 의무 : 법률상 구속이고 내용은 특정한 불이익

Ⅱ. 권리를 갖는 사람

- 1. 권리의 주체
-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 (1) 자연인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1) 출생
-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갖는다.
- 출생신고와 같은 절차없이 출생한 사실만으로 충분하며, 어느 시점을 출생시점으로 볼 것이냐는 학설의 견해가 나뉜다.

======= 【 기술보호와 법 】========

-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노출된 순간부터 출생한 것으로 보는 전부노출설이 통설

2) 사망

- 권리는 사망과 동시에 소멸한다.
- 사망의 시기는 호흡과 심장의 박동이 정지한 때이다(심장박동정지설)

(2) 법인

- 자연인이 아니면서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된 자

-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과 작용을 가지고 결합된 사람의 단체

-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일단의 재산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1) 발명자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을 한 자, 즉 발명자에게 있다.
- 발명자는 발명적 착상을 하고 이를 구체화한 사람을 말한다. 발명자가 되려면 기술적 사상을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여야 한다. 이는 특허의 요건에 해당하는 신규성,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특허법은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자(무권리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무권리자 등이 특허출원에 대해 선출원주의 적용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특허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공동발명자

- 공동발명자는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발명을 완성시킨 자를 말한다.
- 공동발명이 되려면 ① 2인 이상이 발명의 완성에 참여하여 ② 기술해결을 위한 연구와 실 질적 상호협력이라는 공동의 인식이 존재해야 한다.
- 발명과정에 참여는 하였으나 단순한 조언이나 보조업무에 종사한 자, 관리자 등은 공동발 명자가 될 수 없다.
- 공동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

======= 【 기술보호와 법 】 ========

6. 특허의 효력

(1)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다.
- 특허권자는 정당한 권원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허기술이 차용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므로 실시자는 사업 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 특허권은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다.

(2) 특허의 실시권

-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업으로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 실시권의 종류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눌 수 있다.

1) 전용실시권

-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해 기간·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실시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용실시권이 설정되면 특허 권자라도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2) 통상실시권

- 통상실시권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전용실시권의 상대개념으로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 조건 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통상실시권은 일정기간동안 실시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하나의 통상실시권이 설정되더라도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다른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7. 직무발명

Q. A는 연봉 1억을 받으면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세계최초로 발명한 기술을 특허등록이 되었다. 이 특허는 누구의 것인가?

(1) 직무발명의 의의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 기술보호와 법 】 ========

- 현재 발명진흥법에서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 정당한 보 상을 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한 "법정보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 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 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법정보상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선진국에 비해 종업원이 고용계약 체결시 보상 문제 등에 대해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 있으며, 사용자 등은 직무 발명을 급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종업원의 노동의 결과물이라는 인식이 아직 만연되어 있 는 등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이었다.

(2) 직무발명의 요건으로 고용관계

- 직무발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종업원의 발명이라고 하여 모 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직무발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과거 또는 현재 직무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다른 회사의 경험에 기반한 발명은 직무발명이 될 수 없다.

(3) 자유발명과 업무발명 비교

- 자유발명 :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을 말한다.
- 업무발명 :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만, 종업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을 말한다.
- 예. 제약회사의 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신약을 개발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속하지만, 이 연구원이 새로운 악기를 발명하였다면 자유발명이 된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의 총무팀에 근무하는 직원이 새로운 방식의 자판을 개발한 경우에는 업무발명에 속하게 된다.
- 자유발명과 업무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4) 직무발명의 보상

1) 종업원의 통지의무

-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 종업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4개월 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종 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사용자가 4개월 내에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만약 사용자가 승계여부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사

======= 【 기술보호와 법 】 ========= 용자 등은 그 발명을 한 종업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2) 보상금 산정기준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 사용자와 종업 원이 공헌한 정도,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직무발명 보상금은 직무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액' 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3) 직무발명 보상 사례

- 일본 SONY사의 경우 출원·등록시 최고 100만엔을 지급하고 기술공헌도에 따라 차등지급 하고 있다. 예를 들면, 6등급으로 평가되면 연간 5-200만엔을 지급한다.
- 일본 후나이전기의 경우 특허수입이 100만엔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초과시에는 초과분의 5%를 추가지급하고 있다.
- 직무발명의 보상금액 수준은 회사의 규모와 매출액, 발명의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A. 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하였다고 기업소유로 보는 것이 정당해 보일 수 있다. 연구개발을 위해 엄청난 급여를 제공하고 채용된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의 발명은 기업의 것으로 보이기 쉽다. 직원이 직무상 개발한 발명이라도 원칙적으로 직원의 것이다. 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직원이 한 발명을 아무런 대가 없이 당연히 기업의 소유로 한다면 회사 소속 연구원이 열심히 기술개발을 하려고 노력할 요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직무상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의 소유로 한다. 연구원의 개발 결과물을 발명자의 소유로 하고 기업은 이익을 나눌 수 없다면, 기업도 직원을 고용할 의지도 없게 된다. 고액의 연봉을 주고 채용하였는데, 직원의 발명이 모두 직원의 소유가 되면 누가 연구개발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겠는가. 그래서 직원의 '발명하고자 하는 의지'와 기업의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 사이에서의 균형을 위해 생겨난 것이 '직무발명제도'인 것이다.
- Q. A회사의 회장이 직원에게 신기술개발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만들어진 발명은 발명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회장도 발명자가 될까?
- A. 발명자에게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래서 누가 발명자인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발명자만이 특허를 출원할 수 있고, 발명인으로 등재된 사람만이 직무발명 보상이라는 고생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회장의 아이디어에서 착상하여 발명이 시작되었고, 회사의 연구원이 구체화시켜 발명을 완성한 경우, 회장은 발명의 착상에는 참여했지만, 발명의 구체화를 통한 완성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단순 착상(아이디어) 제공자는 발명자로 보지 않으며, 착상 후 구체적인 창작 활동에 참여한 사람만을 발명자로 본다. 따라서 발명의 착상에만 기여한 회장은 발명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실질적 구체화에 기여할 경우에만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다.

====== 【 기술보호와 법 】 =======

Q. A는 연구 제안을 하였으나,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답답하여 회사를 퇴직하고 창업을 하여 직접 만들어보기로 하였다. A가 퇴직한 후 창업하여 완성한 제품의 특허는 A의 것일까?

- A. 기업에서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기술과 관련한 핵심인재의 관리이다. 핵심인재와 함께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속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면 좋지만, 우수한인재가 회사를 떠나서 새로운 창업을 하거나 경쟁사에 취업하는 일이 발생한다. 기업입장에서는 인재의 유출과 함께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퇴직 전에 발명의 착상을 하였지만, 퇴직 후 새로운 직장 또는 창업을 하여 발명을 구 체화하였다면 퇴직 연구원의 발명이 된다.
 - 기업의 입장에서는 퇴직 전에 발명의 착상 뿐만 아니라 발명의 구체성이 실현되었음을 입증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진척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때 '연구노 트'가 활용될 수 있다. 연구노트를 잘 관리해두면 퇴직 후 발명에 대한 퇴직자와의 다 툼에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사전예방의 효과도 된다.
 - 발명의 착상단계를 넘어 발명이 구체화된 완성 단계에서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창업을 한다면 명백한 기술유출이 된다.

<사례>

몇 년 전 삼진식품에서 5년 동안 3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찰떡파이 특허기술을 퇴직한 직원이 청우식품에 노출하여 삼진식품의 시장을 잠식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삼진식품을 초코파이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오리온'의 아성을 무너트리며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국민과자로 통하는 '오리온 초코파이'에 도전장을 내밀고, 전통 찹쌀떡에 초콜릿을 입힌 '찰떡파이'를 독자 개발하여 선풍적 반응을 이끌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가루가 키보드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PC방 등에서는 선풍적 인기를 누렸다고 한다.

삼진식품에서 연구개발부장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청우식품으로 직장을 옮긴 후 개인 노트북에 있던 찰떡파이 배합 시율표 등을 활용하여 '찰떡쿠기'를 출시하였고 제조방법도특허등록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삼진식품과 청우식품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대법원이 청우식품의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여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만약 '찰떡쿠키'의 특허가 정당화되었다면 삼진식품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